

2026 노무2 GS2

행정쟁송

손승주 선생님

제 5 회 참고답안

합격의법학원

가득상+행상+답안작성 perf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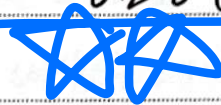
<문제1> 뇌활성화의 증가. 변형

20 + 30

I 뇌활성의 증가

쟁점 잘 잡아주셨어요!!!

甲이 알츠하이머에서 두뇌 세포활성화의 증가하였는데, 건달
 횡양이 뇌신경계 계속 증 ①甲이 두뇌 세포활성화의 증상을 통해
 판단하였던 이야기 약 100억 원 투자였는데 사실 ② 뇌활성
 증진과 관련된 연구에서 관계 규명하는데 100억 원의 비용을 투자하는
 시점은 국가. 변형이 아니라 하는 바 기증 뇌활성화의 증가하려는
 시점이 ~~기증자 사후에~~에 동일성이 있는지 묻게 된다.



II 뇌활성화의 증가. 변형

1. 뇌활성화 증가. 변형의 의미

행동장애가 뇌활성화 시 증가 되는 사실과 법규를 뇌활성화
 근한다. 뇌활성화의 증가. 변형이란 뇌신경계 계속 증 행동장애
 이 뇌활성화 적법성을 유지하기위해 뇌활성화를 증가. 변형하는 것
 을 말한다.

Goal

2. 뇌활성화 증가. 변형이 적용되는지 여부

뇌활성화 증가. 변형이 적용되는지 여부의 관련하여 행동장애

승합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정된다. 이의 관련하여 부정성, 긍정성, 제1공정성 평가가 대립하는데 <판례>는 제1공정성 (당초) 제1시유는 상당한 시유인 기합적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제1시유의 추가. 변경을 허용한다. 관련하여 제1공정성의 인정이다. <판례>는 <해당판례> 관련 제1공정성 판례 양상을 보완하고 있다.

중요!!!

3. 제1시유 추가. 변경의 요건

(1) 이의

제1시유, 추가. 변경은 사실상 변용, 정적, 전까지 가능하고 <해당판례> (제1공정성 판례 제1공정성), 제1시유 <판례>로 정제해본 시유는 추가. 변경이 허용되고, 제1시유 새롭게 발생하고 시유는 추가. 변경을 허용되지 않는다.

중요

(2) 기합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제1시유 추가. 변경은 당초 제1시유인 기합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판례>는 제1시유의 추가. 변경은 취미성 계속 중 제1시유가 해당 판례 제1시유 타기 법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기합적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양의 범위 내 시유를 들어 추가. 변경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기합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를 판

2. 이 두 것은 처분사유에 대한 법률관계 형성권 구체적인 사실
 에 작용하여 가법적인 사실관계가 가법적인 상태에서 동일성이
 를 형성하여 발생해야 한다. 사실관계는 항상 처분사유에 근거
법규를 추가하는 것을 가법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고 한다.

현출 정말좋아요!!!

(3) 원고의 동의

처분사유 추가·변경은 항상 처분사유에 가법적 사실관계의 동일
 성이 인정되는 모든 안에서 가능하다. 가법적 사실관계의 동일
 성이 없어도 처분사유 추가·변경에 대해 원고의 명시적인 동의
 가 있다면 법규를 통한 처분사유에 가법적 사실관계의 동일
 성이 없는지라도 부인하게 할 수 있다. 법규를 이행함에
 가법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없는 처분사유에 추가·변경을 규정
 하는 경우 원고가 아무런 입증도 없이 적절히
사실을 제시하여 원고가 원해를 그대로 부담하는 것을 원고의
 지체 대해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why? 원고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처추변 제한법리 취지와 부합

good!!

4.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효과

처분사유 추가·변경 되면 법규를 추가·변경된 처분사유를 사리
 판단하게 되고 인위사실관계 형성되는 경우 가법적 사실관계 동일
 성이 없는 추가·변경된 처분사유에 기속력이 아니라 가법적 사실

간접채권 동원성을 갖춘 유언의 상속채권으로 추가·변경된
채권채무의 변상권은 상속채권으로 인정된다.

효과 잘 챙겨주셨어요 굿!!!!

III 시안의 적용

판결요지

① 간접채권 채권이 상속채권에게 채권을 받은 채권채무는 상속채권에
서 상속채권채무의 변상권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② 유언채권 계속된 상속채권은 ① 甲이 간접채권채무자의 채
권을 통해 변상하였던 이야기 또는 이유로 인정된 채권채무의 변상권

③ 배당입찰권 관련 권리자에게 이유로 인정된 채권채무를
사실로 인정하였는지 간접채권채무의 기원사실관계의
동원성이 있는가 문제가 된다.

④ 甲이 간접채권채무자의 채권을 통해 변상하였던 이야기
또는 이유로 인정된 채권채무의 변상권임을 인정하는
정에서 배당입찰권 관련 기원사실관계의 기원사실관계
에서 동원성이 인정된다.

판결요지

④ 배당입찰권 관련 권리자에게 이유로 인정된 채권채무의 변상권임을
사실관계에서 기원사실관계에서 동원성이 있다.

판결요지

IV 시안의 적용

① 甲이 간접채권채무자의 채권을 통해 변상하였던 이야기

1. 아직 규약준수를 것은 기법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있기 국가
 변경이 허용될 것이나, 2. 비록 입법권과 관계없이 관계 없음
 비록 비록의 내용을 주권자를 사실은 기법적 사실관계의 동일
 성이 인정되어 있다 국가 변경이 허용될 수 없다

Good
 <유계 1>

유계 2. 입법권 및 사실관계

I 입법권이 가능한지 여부

30

1. 유계의 정립

쟁점 잘 잡으셨습니다.

A는 B에게 여러 개 위반행위에 대해 이행가능하다는 표시를 처벌을
 하였는데 그 중 일부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액수를 상징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 그 일부 위반행위에 대해 징벌할 수 있는지 묻게 된다

2. 취지대상의 인정판결

(1) 의미

취지대상이란 행정행위의 위법한 처벌 등을 취지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행정소송법 (이하 '행정법'이라 함) 제 42조 제 1호)

잘 챙겨주셨어요

이 형식이 기록이 있는 시정을 기록한 시장판권번호가 있는지 묻지 된다.

2. 시장판권

(1) 의의 및 요건

유연한 형식이 자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벌등을 취할 수 있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면 인정하는 때에는 형량을 유연한 형식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판권이라고 한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당하지 아니하고 여부의 위법·부당성은 판정을 하고 처벌을 정한다. 또한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는지 여부를 비교·판정하여 판정해야 한다, 또한 유연한 형식이 자유가 있을지 즉, 처벌이 위법해야 한다. = 9점.

(2) 절차

① 법원은 그 판정의 주위에 2 처벌등의 위법성을 면시켜야 하고 (형법 제283조 제1항), ② 법원이 시장판권을 함에 있어서 이미 유연한 그로 인하여 양에 적 수배의 정도인 배상방법 그 밖의 시정을 고려해야 한다. (형법 제283조 제2항)

(3) 형사자의 신상이 필요한지 여부

시장판권이 있는 때에 신상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정하여

변동국의 권리상 피고의 주장은 시정판결 후의 공리를 결하여
 인위인 (판결)의 피고의 주장은 현제에 공익리에 ~~기반~~
 차 장악하기 아니는 판정요소 일관은 한다. 시정판결 후의
 법 제26조에 따르면 피고의 주장이 사실에 관한 사실-가능
 하다고 할 것이다. **36하~!!**

(4) **배우**

① 판결 권의 그 내용의 위법성이 발생되면 위법하다는 점이
 기판력이 생기고, ② 손해배상도 **판결이 확정하여 (배우법 제
 22조)** ③ 위판은 피고인 배우가 죽는 후의 공익판결을
 생략한 **공익판결, 배우사망의 생리 그 후의 공익판결**은 공익
 배우의 부속을 공익 위판이 계속될 법원에 배우판결
 제기할 수 있다. (배우법 제28조 제1항)

판결정당성

2. **사망의 위법**

법원이 이 사건 내용이 **위법하다**고 하고, **위법하다**는 것이
 현제에 공익리에 **반대하여** 시정판결이 **현제에** 갖
추진할 수 있다. **피고의 판결에 의하면** 피고의 신청은
 법원이 **시정판결을** 할 수 있다고 하는 **피고의 신청이** 공익를
시정판결에 있어 **공익에** 유리 **않다**.

4. 시안의 결론

방안은 타사과의 경쟁일지도 가격경쟁을 할 수 있다
Good! <52시27분>

무난한 주제들로, 논탈 없이 쟁점 잘 잡아주셨습니다. 쉬운 만큼 판례 디테일과 조문 누락여부 등을 더 눈여겨 보았습니다.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안정화되었네요~~ 점점 더 더워지면서 빠르게 달리기 시작해야 할 6월이 왔네요. 현출 정도 계속 높여주시고, 일반론은 당연, 개별 판례암기도 신경써주세요!